

가맹계약서

가맹본부	키치키치 동성로점				
상호	키치키치 (KITCH KITCH)				점
계약체결일	201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일	201	년	월	일	인
가맹계약서 제공일	201	년	월	일	인
신규			갱신		

본 계약서는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열람 및 계약체결과 공정거래 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용도이외에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문

가맹본부 키치키치 동성로점(이하 '갑'이라 한다)과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키치키치 (KITCH KITCH)]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는 [키치키치 (KITCH KITCH)]의 영업표지 등과 '갑'이 개발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해 '갑'과 '을'이 건전한 상도덕을 준수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및 유지를 위해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6. '상품'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승인한 서비스 품목을 말한다.

제 3 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개설하는 '을'의 가맹점표시는 아래와 같다. '을'은 아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분	내용
상호	키치키치 (KITCH KITCH)_____점
가맹점사업자명	
점포 소재지	
점포 규모	m ² (약 평)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갑'과 '을'은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본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 ③ '갑'과 '을' 간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어떠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채무 등 부담에 대하여는 '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약한다.
- ④ '을'은 사업장소, 대표자 및 가맹점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영업표지 및 시스템 사용권의 부여]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개설하는 '을'의 영업표지의 승인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키치키치 (KITCH KITCH)의 상표 및 간판
 2. 키치키치 (KITCH KITCH)의 서비스표
 3. 키치키치 (KITCH KITCH)의 로고 및 휘장
 4. 키치키치 (KITCH KITCH)의 상호
- ② '갑'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시장분석, 고객 분석, 영업방법, 종업원 교육 및 훈련,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홍보, 교육, 마케팅, 가맹점 운영, 상품 등의 판매 및 관리로 구성된다.
- ③ '갑'은 '을'에게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조 제2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 ④ '을'은 당해 가맹점 점포에서 '키치키치 (KITCH KITCH)' 사업이외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 ⑤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은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 ⑥ '을'은 '키치키치 (KITCH KITCH)'에 관한 일체의 이미지물,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영업지역 및 입지선정]

- ① '갑'은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을'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 ② '을'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갑'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을'이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을'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오픈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을'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은 '갑'이 지정해준 지역에서만 입지선정 및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영업지역에 대하여 약 반경 150m 단위를 기본 영업지역으로 하며, 협의 후 결정한 다음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 ④ '갑'은 '을'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운영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갑' 또는 '갑'의 계열사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갑'은 영업지역의 변경에 대해 '을'과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개점의 준비

제 6 조 [최초가맹금 등]

'을'은 '키치키치 (KITCH KITCH)'시스템을 영위하기 위해 '갑'에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갑'에게 지급해야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VAT 포함)
1	가맹비	금 육백육십만원(₩6,600,000 / VAT포함)
2	교육비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 / VAT포함)
3	계약이행 보증금	없음

제 7 조 [계약이행 보증금]

- ① '을'은 본 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공급품의 대금 등)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액은 없다.

제 8 조 [가맹금의 예치]

- ① '을'은 제 6조 상의 최초가맹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에 의해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가맹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예치한 후 '갑'에게 예치가맹금의 금액과 예치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금액(VAT 포함)
가맹비	금 육백육십만원(₩6,600,000 / VAT포함)
교육비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 / 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합계	금 팔백팔십만원(₩8,800,000 / VAT포함)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③ 동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을'은 본조 제1항의 금액을 계약체결 시 '갑'의 계좌로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 9 조 [가맹금의 반환]

- ① '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제6조의 최초가맹금은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제10조에 의한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는다.

제 10 조 [교육훈련]

'을'은 [키치키치 (KITCH KITCH)] 가맹점사업자로서 효율적인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갑'이 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가맹점의 인테리어 설비]

- ① '을'은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시설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갑'

이 지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설비는 '갑'이 정한 사양에 따라 '을'이 직접 시공하거나 '갑'이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다.
- ③ '을'이 '갑'에게 가맹점의 설비를 의뢰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별첨A]**의 인테리어 설비 의뢰서를 작성한다.
- ④ '을'이 인테리어 등의 점포시설을 직접 하는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간판, 판넬 등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갑'이 정하는 규격 및 모델을 참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⑤ '갑'은 '을'이 직접 시공(점포환경개선 포함)할 경우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자를 파견하여 '을'이 '갑'의 인테리어 통일성을 준수하는 공사를 진행 하는지를 확인하며 '을'은 '갑'이 파견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⑥ '을'은 시설공사에 관련한 제반문제는 '을'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갑'을 개입시키지 아니한다.
- ⑦ '갑'은 다음의 경우 '을' 매장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⑧ '갑'이 '을'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점포환경개선 유형	지원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 ⑨ 전항에 의한 '갑'의 비용 지원은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제 12 조 [기타 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

- ① '을'은 '갑'이 정보공개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의 기자재 및 집기, 개점 소품, 개점 준비물, 기타품목(이하 '기타 설비 등'이라 한다)의 구입과 설치를 직접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에게 강제품목에 해당하는 기타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권장품목에 대해서는 '갑'이 제시한 기타설비 등의 기준과 사양에 맞추어 직접 구입 하거나 **[별첨B]**에 따라 '갑'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을'이 직접 구입하

는 경우 '을'은 '갑'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갑'이 정한 집기·비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을'의 비용으로 재구입하여야 한다. 단, 기존 동종의 사업자로서 기타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과 별도 협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갑'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을'의 시설물,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항상 응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결과 '을'이 '갑'이 공급 또는 인정하지 아니한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여 [키치키치 (KITCH KITCH)]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갑'은 동 집기·비품 등의 사용 중지 및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의 시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제3항의 품질검사 결과 시정을 요구한 집기·비품 등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갑'은 '갑'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물품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 13 조 [초도물품 공급]

- ① '을'은 가맹점의 개점과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초도물품을 개점 전까지 '갑'과 협의하여 '갑'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 ② 전항과 달리, 권장 품목에 대하여 '을'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 개점 3일 전까지 자신의 가맹점에 구비 완료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가맹점 운영을 위한 인허가]

- ① 가맹점 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시 필요한 증명서 등의 제반 인·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갱신한 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5 조 [가맹점 개점의 승인]

- ① '을'은 개점일 전일에 '갑'에게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한 가맹점의 설비, 추가품목, 초도물품 등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개점 전일까지 '갑'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통지 태만으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을'은 개업에 앞서 직접 실시한 가맹점의 설비와 추가품목, 초도물품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갑'이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시설공사의 완전성,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개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가맹점의 영업활동

제 16 조 [계약기간]

본 가맹계약은 최초가맹계약 기간을 가맹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가맹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씩 연장하되, 갱신 절차는 제33조에 의한다.

제 17 조 [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 ① '을'의 점포 개설 이후 '갑'의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노후화되어 오염, 훼손된 집기(또는 기기)들을 교체·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과 협의하여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보수할 수가 있으나 다만 반드시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갑'이 정한 사양에 따라 교체·보수 하여야 한다.

제 18 조 [대금의 납부]

- ①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을'에 대한 경영지원과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정된 로열티로 **매월 고객 결제액(매출액)의 8.8%(부가세포함)**을 지급한다.
- ② '을'은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계약 종료 시까지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한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공급하지 않는 물품 등 (원·부재료 등)은 '갑'이 지정한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1. '을'은 가맹계약기간 중 '갑'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을 아래의 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대금지급 항목	지급기일
물품대금	익월 5일
로열티	월말 후불

제 19 조 [물품의 공급 및 자점매입의 금지 등]

- ① '을'은 본 계약상 브랜드의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갑'이 **별첨[2]**에서 정하는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에 불구하고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가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와 '갑'으로부터 사입이 승인된 물품 등은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갑'이 제시하는 상품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갑'은 필요한 경우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품질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물품 등을 타인 또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물품 등 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물품의 하자 및 반품]

- ① '을'은 물품 등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지, 대금감액, 반품,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갑'이 지정한 업체로 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공급한 업체에게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을'이 물품 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하자있음을 알면서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한 공급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공급품 또는 '을'이 보관상의 잘못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21 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 ① '을'은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상품 등의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하거나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을'이 임의로 판매하는 품목을 변경시킬 수 없다.
- ② '을'은 가맹점 운영의 경영합리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갑'은 필요에 따라 운영매뉴얼을 변경,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을'은 이 경우 새로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서비스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 22 조 [물품 공급 중단]

- ① '갑'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물품 등의 재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을'이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4.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5.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을'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7. '을'이 물품대금,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8. '을'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9. '을'이 노후 된 사업장 인테리어·설비·교구·홍보용품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2. '을'이 '갑'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3.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4.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② '갑'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즉시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3. '을'이 강제집행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물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을'이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 23 조 [경영지도]

- ① '갑'은 '을'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갑'의 판단 하에 '을'의 경영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전항의 경영 지도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24 조 [광고·판촉]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 및 통일성과 고객만족을 위하여 전국적인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을 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가맹본부'가 하는 전국 및 지역 등 광고 전체 행사의 경우 광고의 횟수, 시기, 매체,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상품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총비용의

50%,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광고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총비용의 50%를 부담하고, 가맹점 모집광고가 병행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총비용의 75%,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광고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총비용의 25%를 부담한다. 다만, 가맹점 모집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 한다.

- ③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전국 및 지역 등 전체 판촉행사의 경우 판촉의 횟수, 시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총비용의 50%,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광고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총비용의 50%를 부담한다.
- ④ 전국 및 지역 광고 또는 판촉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입금방법 및 절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증진을 위하여 자기비용으로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할 경우 그 내용, 형식, 소재, 계획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팸플릿,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⑦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 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25 조 [개점 후 교육훈련]

- ① 개점 이후 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재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전항에 따른 교육실시가 있을 경우 '갑'은 그 사유를 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갑'은 가맹점 개점 후에도 '을'의 가맹점관리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6 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 ①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고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갑'은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의 양수인은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 ④ '갑'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27 조 [영업의 상속]

- ① '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가맹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갑'은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하게 할 수 있다.
- ③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금 중 가입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영업시간]

- ① '을'의 영업일수는 주6일 이상, 영업시간은 무인사진관임을 감안하여 24시간 영업한다.
- ② 휴업하기 위해서는 휴업 2일전 '갑'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로 7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 29 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 ①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갑'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을'은 '갑'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은 계약의 존속 중 '갑'의 서면 동의 없이 국내 전 지역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0 조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 ① '갑'은 '을'의 가맹점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갑'이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점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필요시 소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가맹점사업자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보험의 가입]

- ① '갑'은 '을'에게 가맹계약기간 동안 가맹사업 영업과 관련하여 '을'의 종업원 및 기타 고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영업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안 업체 이용 등을 권유할 수 있다.
- ②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 및 수정하는 경우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 및 보안업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을'은 제1항,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④ '을'이 제1항,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갑'의 사업의 대외적 신용도 추락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갑'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2 조 [회계자료 및 통지의무]

- ① '을'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갑'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갑'의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하여 연 매출액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을'은 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갑'의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사업장소, 대표자 및 가맹점 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등록증 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제3자가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

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그 침해방지에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종료 등

제 33 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갱신 거절 등]

- ①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다만, '을'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갑'과 '을'은 갱신 시점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 하에 특별약정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 대한 물품대금, 대여금, 계약이행 미납금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및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운영 시스템이나 디자인 등의 변경으로 영업표지 및 인테리어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 및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5. 기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갑'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본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③ 전항의 '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④ '갑'이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갑'이 제2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4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을'이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3. '갑'이나 '을'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4. '갑'이나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5. '을'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34 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 ① '갑'과 '을'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의 경우,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해지가 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은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이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을'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갑'의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

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6. '을'이 '갑'과 약정한 물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7.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8.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9. '갑' 또는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갑' 또는 '을'이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나.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다. '을'이 '갑'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같은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을'이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제 35 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① 계약이 종료되면 '을'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이 종료되면 '을'은 '갑'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갑'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을'이 제2항의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갑'이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을'이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 완료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 ⑤ '을'은 가맹점의 영업양수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갑'이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을'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을'은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6 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이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34조(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키치키치 (KITCH KITCH)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

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제29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계약의 종료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씩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제칙

제 37 조 [지연이자]

- ①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갑'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갑'이 '을'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연체대금의 채권상환은 비용, 이자, 선 발생채권 순으로 상계 처리한다.

제 38 조 [완결조항 및 계약의 수정 등]

-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규정한 완결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수정, 보충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상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팩스(FAX), 인편 또는 우편으로 '갑' 또는 '을'의 계약상 주소지로 배달되어야 한다. 단, 별도의 주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9 조 [분쟁의 해결 절차 및 관할법원]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갑'과 '을'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또는 사·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제3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갑' 또는 '을'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40 조 [정보공개서 자문]

'을'은 정보공개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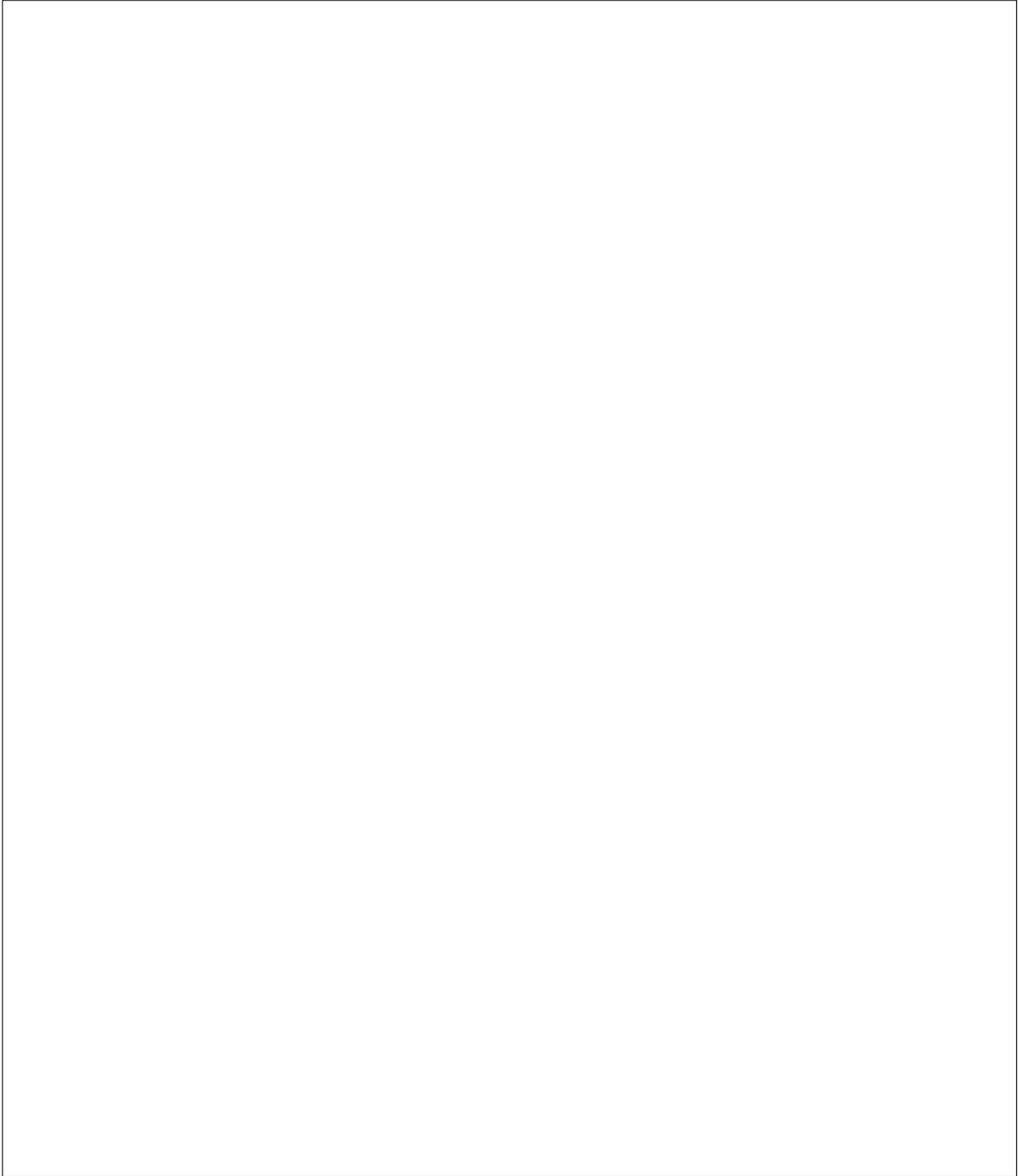
※ [특약사항]

- ①
- ②
- ③

별첨 [1] 영업지역의 표시

<영업지역의 범위>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영업지역의 범위를 설정함.



- 별첨 [2] “갑”이 정한 공급 물품 내역

※ 아래 품목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품목 및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내역

구분	순번	품목	규격(개수)	거래상대방	강제/권장
평 일 공 급 물 품					

별첨A. 인테리어 설비 의뢰서

본인은 키치키치 (KITCH KITCH)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의거 본인의 가맹점 내·외부의 설비(인테리어 등)를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키치키치 (KITCH KITCH)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키치키치 (KITCH KITCH)이 시공하여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별첨B. 기타 설비 구입 의뢰서

본인은 키치키치 (KITCH KITCH)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의거 본인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기타설비를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키치키치 (KITCH KITCH)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키치키치 (KITCH KITCH)이 구입 및 설치해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가맹본부)

상 호 : 키치키치 동성로점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5길 17, 1층
사업자등록번호 : 236-50-00813
대 표 자 : (인)

'을'(가맹점사업자)

상 호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계약 체결상의 상호의무이행 확인란>

'갑'은 '을'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및 본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을'은 본 계약상의 전반적인 내용 특히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본 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함.

'을'(가맹점사업자) 성 명 : (인)